

★ ◎

사장 방침 제48호

| | |
|------|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인사노무부-387 |
| 보존기간 | 30년 |
| 결재일자 | 2016.01.27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일상감사 | 대상아님 |

| | | | |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부 원 | 인사노무부장 | 경영지원처장 | 기획경영본부장 | 사장 |
| | | | | 01/27 |
| 박민철 | 이상석 | 문완식 | 김우진 | 변창흠 |
| 협 조 | 파트장 | | 유호석 | |
| | | | | |

2016년도 SH공사 연간표창 계획

서울특별시 SH공사
(기획경영본부 인사노무부)

2016년도 SH공사 연간표창 계획

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직무에 임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한 직원 및 업체 등을 발굴하여 2016년도 주요 공사사업 및 운영 전반에 걸쳐 표창하고자 함

I 표창 개요

1. 근거

가. 인사규정 제40조(포상), 제41조(포상의 종류), 제42조(추천과 심사), 제43조(포상시기)

나.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2조(인사위원회의 임무), 제57조(직원의 포상)

2. 2016년 표창 종류 및 인원

| 구 분 | | 계 | 시 장 | 사 장 |
|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|-----|
| 계 | | 143 | 25 | 118 |
| 직무유공 | 정기 | 40 | 18 | 22 |
| | 수시 | 18 | - | 18 |
| 노사협력유공 | | 13 | 5 | 8 |
| 집단에너지사업단 직무유공 | | 7 | 2 | 5 |
| 광역 주거복지센터 직무유공 | | 4 | - | 4 |
| 주택관리유공 | | 18 | - | 18 |
| 임대아파트 입주민 유공 | | 11 | - | 11 |
| 유공업체직원 | 정기 | 22 | - | 22 |
| | 수시 | 10 | - | 10 |

※ 시장표창 배정인원은 2016년 서울시 표창계획 확정(1월말 수립 예정) 후 조정시행 가능

II

표창기본방향

공사 운영 전반에 걸쳐 각 현업·지원 부서 등에서 시책 및 공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거나 조직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해온 직원 및 유공업체 등 표창

1. 직무유공 표창

■정기표창 : 공사창립일, 연말 ☞ 본부별 현원 고려하여 분배·추천

■수시표창 : 사유발생시 ☞ 본부에서 사장(감사) 방침을 득하여 대상자 선정 통보

※ 방침수립시 인사노무부장 협조결재 반드시 포함

2. 노사협력유공 표창

■근로자의날, 노조창립일 : 노동조합에서 선정하여 인사노무부에 통보

3. 광역 주거복지센터(주거복지단) 직무유공 표창

■연말 : 자체 주거복지 프로그램 기획, 발굴에 기여한 광역 주거복지센터 직원 추천

4. 주택관리유공, 임대아파트 입주민유공 표창

■공사창립일, 연말 : 주택관리사업에 기여한 임대주택관리 전담직원

(이하 주거복지상담사 포함), 입주민 등 추천

5. 유공업체직원 표창

■정기표창 : 공사창립일, 연말 ☞ 기술분야 상벌심사위원회에서 확정 통보

※ 건설안전사업본부 건축기술부 주관시행 : 『기술분야 상벌심사위원회운영기준』

단, 사무분야 유공업체 추천시에는 인사노무부 협의 후 해당 본부에서 자체 심의의결

■수시표창 : 신기술적용 등 사유발생 시 ☞ 건설안전사업본부(건축기술부)

에서 선정·통보

6. 퇴직유공 표창

■정년퇴직 : 공사 발전에 기여한 정년퇴직자 추천

1. 표창대상자 선정 기준

가. 직원(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, 집단에너지사업단 포함)

: 인사규정 제40조 해당 직원

-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직원
-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
-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한 직원
-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직원
- 기타 공사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직원

나. 유공업체 직원

- 공사 사업추진에 기여한 우수 유공업체 직원

다. 임대아파트 입주민

- 주민봉사, 주민화합,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,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거나 공사업무에 적극 협력한 입주민

2. 추천 제한 기준

가.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※ 2016년도 서울시 표창계획에 따라 변동가능

-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직원
-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직원
-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희롱·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
-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
- 말소기간 : 불문경고 1년, 견책 3년, 감봉 5년, 정직 7년, 강등 9년
- 훈계·경고·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
-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(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)
 - 단,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
 - 사업으뜸이의 경우,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
-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
-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,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-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,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, 수사 중인 자
- 기타 공·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나. 사장표창 추천 제외자

- 본부·실 근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직원 (직제개정으로 인한 전보 제외)
-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사장 이상의 정기표창 수상직원
- 복무자세가 불량하여 공·사생활을 통해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직원
- 출(퇴)근, 무단이석, 보안점검에 추천일 기준 직전 1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직원
- 징계의결 요구중인 직원 및 징계처분, 직위해제, 휴직 중에 있는 직원
-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
- 경고·훈계 : 3월, 견책 : 6월, 감봉 : 12월, 정직 및 강등 : 18월
- 채용비위 관련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직원('16.1.11.이후 처분부터 적용)
-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희롱·성폭력 비위와 관련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,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, 수사, 기소 중인 직원

IV

표창인원 및 부상

1. 표창인원 (총 143명 : 시장표창 25명, 사장표창 118명)

가. 시장표창 배정 : 25명

(1) 직무유공 표창 : 18명 (창립유공 8명, 연말유공 10명)

| 구 분 | 계 | 기획경영 본부 도시연구 교육원 | 주거복지 본부 | | 도시재 생부 본 | 공공개 발 사업 본부 | 택지사 업 부 본 | 건설안 전 사 업 본 부 | 감 사 |
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| | | 본사 | 센터 | | | | | |
| 계 | 18 | 3 | 2 | 4 | 2 | 2 | 2 | 2 | 1 |
| 창립 | 8 | 1 | 1 | 2 | 1 | 1 | 1 | 1 | - |
| 연말 | 10 | 2 | 1 | 2 | 1 | 1 | 1 | 1 | 1 |

※ 주거복지본부의 '센터'는 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(주거복지상담사 포함)에게 배정

- (2) 노사협력유공표창 : 5명 (근로자의 날)
- (3) 집단에너지사업단 직무유공 표창 : 2명 (창립유공 1명, 연말유공 1명)
- (4) 퇴직유공(정년퇴직)표창 : 2016년 해당 없음

나. 사장표창 배정 : 118명

(1) 직무유공 표창 : 40명

■ 정기표창 : 22명 (창립유공 10명, 연말유공 12명)

| 구 분 | 계 | 기획경영 본부 도시연구원 교육원 | 주거복지 본부 | 도시재생 본부 | 공공개발 사업본부 | 택지사업 본부 | 건설안전 사업본부 | 감 사 |
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
| 계 | 22 | 5 | 4 | 2 | 3 | 3 | 4 | 1 |
| 창립 | 10 | 2 | 2 | 1 | 1 | 1 | 2 | 1 |
| 연말 | 12 | 3 | 2 | 1 | 2 | 2 | 2 | - |

■ 수시표창 : 18명 (채무감축, 창의제안, 감사수범, 원가절감, 미분양해소, 신기술개발, 재난안전 등 유공직원 공적발생 시 조정 시행)

(2) 노사협력유공표창 : 8명 (노조창립일)

(3) 집단에너지사업단 직무유공 표창 : 5명 (창립일 2명, 연말 3명)

(4) 광역 주거복지센터 직무유공 표창 : 4명 (광역센터별 연말 4명)

(5) 주택관리유공(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 등)표창 : 18명 (창립유공 9명, 연말유공 9명)

(6) 임대아파트 입주인 유공표창: 11명(센터별 연말 11명)

(7) 유공업체직원표창 : 32명

■ 정기표창 : 22명 (공사창립일 11명, 연말 11명)

| 구 분 | 계 | 기술분야 유공업체 | | | | | 사무분야 유공업체 | |
|-----|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|
| | | 품질안전 | 시공평가 | 감리평가 | 하자평가 | 본부별 유공 | 주거복지 본부 | 기타* |
| 계 | 22 | 2 | 2 | 2 | 2 | 8 | 4 | 2 |
| 창립 | 11 | 2 | 2 | 2 | 2 | - | 2 | 1 |
| 연말 | 11 | - | - | - | - | 8 | 2 | 1 |

※ 단, 기타 분야 추천은 인사노무부와 반드시 사전협의 필요

■ 수시표창 : 10명 (Value Engineering, ISO운영, 안전사고예방 등 기타 공적 발생 시)

※ 연말표창계획 수립 시 소속 직원수 및 인사직제개편 등을 고려하여 표창수량 등 재조정 시행가능

※ 직무유공 사장특별표창 수여시에는 별도 방침 마련하여 시행 예정

2. 부상수여

가. 직원(사장표창),입주민 : 문화상품권 20만원권

나. 유공업체 : 소정의 기념품

※ 시장표창대상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부상이 일체 제공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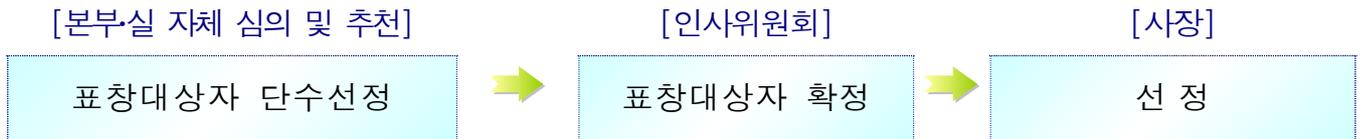
V

추천 방법

1. 추천 및 확정 방법

가. 표창대상자 추천 : 해당 본부·실별 주무부서에서 단수 선정 추천

나. 표창대상자 확정 :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선정



2. 표창종류별 심의부서 및 추천권자

| 구 분 | 자체 포상심의 부서 | 추천권자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직무유공 직원 | 해당 본부·실 | 각 본부장·감사 | - |
| 노사협력유공 | - | 노동조합위원장 | 인사위원회 심의생략 |
| 집단에너지사업단 직무유공 | 집단에너지사업단 | 집단에너지사업단장 | 인사위원회 심의생략 |
| 유공업체 직원 | 기술분야 상별심사위원회 (사무분야 업체 추천시는 해당본부심의) | 건설안전사업본부장 (사무분야 업체 추천시는 해당본부장·감사) | 인사위원회 심의생략 |
| 주택관리 및 입주민 유공 | 주거복지본부 | 주거복지본부장 | 인사위원회 심의생략 |
| 퇴직유공 | - | 해당 본부장·감사 | - |

3. 제출서류

- 추천공문
- 붙임1-시장 및 사장표창 공적조서
- 붙임2-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각1부
- 붙임3-사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각1부
- 붙임4-본부 심의의결서
- 붙임5-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. 끝.

【붙임1】 공적조서 서식

공 적 조 서 (개인 및 기관)

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|--|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
| (1) 성명(기관명) | | | | | | | | | | | (한 자) |
| (2) 주민등록번호 | | | | | | | | | | | - (3) 군번 (군인의 경우) |
| (4) 등록기준지 (국적) | 기재생략 | | | | | | | | | | |
| (5) 주 소 | 기재생략 | | | | | | | | | | |
| (6) 직 업 | | | | | | | (7) 소 속 | | | | |
| 공기업 직원 | | | | | | | | | | | |
| (8) 직 위 | | | | | | | (9) 직급(등급, 계급) | (10) 근무기간 | | | |
| | | | | | | | | | 년 | | 월 |
| (11) 공적요지 (200자 내외) | | | | | | | (12) 공적분야 | | | | |
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<기관 추천>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(10), (19)~(26)은 인사노무부에 확인 요청 후 기재</p> </div> | | | | | | | | | | | |
| (13) 추천훈격 | 서울특별시장 / 사장 | | | | | | (14) 추천순위 | 기재생략 | | | |
| 조 사 자 | | | | | | | | | | | |
| (15) 소 속 | | | | | | | (16) 직 위 | | | | |
| (17) 직 급 | | | | | | | (18) 성 명 | (인) | | | |
|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 추 천 관 | | | | | | | | | | | |
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<조사자, 추천관> - 조사자 : 추천부서장 - 추천관 : 본부장·감사 1부 (※ 사장표창 외 추천시에는 추천관을 기관장으로 한 공적조서 1부 추가 제출)</p> </div>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(인) | |

주요학력 및 경력

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(19) 년 월 일 | (20) 이 력 | (21) 년 월 일 | (22) 이 력 |
| | | | |
| | | | |

과거 포상기록(훈장·포장·표창별로 기록)

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(23) 년 월 일 | (24) 내 용 | (25) 년 월 일 | (26) 내 용 |
| | | | |
| | | | |

(27) 국 가 훈 장

<과거 포상기록>

- 시장, 장관급 이상 표창 공적조서 작성시 : **시장, 장관급 이상 표창기록만 작성**
- 사장표창 공적조서 작성시 : **모든 표창기록 작성**

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

■ 대상자 : 총 명(명단 첨부)

■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

| 구분 | 결격요건 | 검토결과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재직기간 |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| (예시) 해당 없음 |
| 상훈 |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| 해당 없음 |
| 징계 |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| 해당 없음 |
| |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※ 말소기간 : 불문경고 1년, 견책 3년, 감봉 5년, 정직 7년, 강등 9년 | 해당 없음 |
| 훈계 등 | 훈계·경고·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| 해당 없음 |
| 업무수행기간 |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(사업옴이와 조직개편 예외) ※ 단, 사업옴이의 경우,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,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| 해당 없음 |
| 퇴직 |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| 해당 없음 |
| 기타 |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,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,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거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| 해당 없음 |

※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사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

■ 공직선거법 검토(사업옴이 표창시에만 작성)

| 사업명 | 검토내용 | 검토결과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000 사업 유공표창 | -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-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-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| (예시) 적법 |

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6년 월 일

확인자 (추천부서장)

00본부장

(인)

표창 대상자 명단

| 성 명 | 소 속 | 직 급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
| | SH공사 00본부 00처 00부 | 00직 0급 | |
| | SH공사 00본부 00처 00부 | 00직 0급 | |

사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

■ 대상자 : 총 명(명단 첨부)

■ 사장표창 결격요건 검토

| 구분 | 결격요건 | 검토결과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근무기간 | 본부 근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직원(직제개정으로 인한 전보 제외) | 해당 없음 |
| 상훈 |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사장 이상의 정기표창 수상직원 | 해당 없음 |
| 복무 | 출(퇴)근 점검, 무단이석점검, 보안점검 등에 표창일기준 직전 1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직원 | 해당 없음 |
| 징계등 | 징계의결 요구중인 직원 및 징계처분, 직위해제, 휴직 중에 있는 직원 | 해당 없음 |
| |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 - 경고·훈계 : 3월, 견책 : 6월, 감봉 : 12월, 정직 및 강등 : 18월 | 해당 없음 |
| | 채용비위 관련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직원 | 해당 없음 |
| 기타 | 복무지시가 불응하여 공사생활을 통해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직원 | 해당 없음 |
| |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희롱·성폭력비위와 관련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,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, 수사, 기소 중인 직원 | 해당 없음 |

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6년 월 일

확인자 (추천부서장)

00본부장

(인)

표창 대상자 명단

| 성 명 | 소 속 | 직 급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
| | SH공사 00본부 00처 00팀 | 00직 0급 | |
| | SH공사 00본부 00처 00팀 | 00직 0급 | |

【붙임4】 본부 심의의결서 양식

표창대상자 추천 심의의결서

□ 안 건 : 2016년도 00표창대상자 추천 심의의결

□ 일 시 : 2016. 00. 00

□ 장 소 : 00본부장실

□ 의결내용

| 훈격 | 연번 | 소속부서 | 직 급 | 성 명 | 의 결 내 용 |
|----|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시장 | 1 | | | | 시장표창대상자로 추천을 심의 의결함 |
| 사장 | 1 | | | | 사장표창대상자로 추천을 심의 의결함 |
| | 2 | | | | 사장표창대상자로 추천을 심의 의결함 |

위원장 : 0000본부장 000 (서명)

위 원 : 0000부 장 000 (서명)

00본부(실) 표창심의위원회

【붙임5】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(붙임6. 엑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)

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

■ 대상자 : 총 명

| 연번 | 소속 | 직급 | 대외 직명 | 성명 (단체명) | 주민등록 번호 | 재직기간 | 징계 | 상훈 (2년이내) | 비위사실 (6개월이내) | 기타 | 표창일자 (사업일)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1 | 인사과 | 재정행정 사무관 | 재정행정 사무관 | ○○○ | ○○○○○○○- ○○○○○○○ | 07-05 예견5월인 경우 | (예시) 08.04.30 견책 금품수수 ※ 사면, 말소된 경우는 사면(말소)일자 별도 표기 | (예시) 09.11.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| (예시) 12.08.23 주의 (서울시 감사담당관) | 해당 없음 | 2014.2.28 |
| 2 | ○○공사 ○○부 | 003급 | 차장 | ○○○ | ○○○○○○○- ○○○○○○○ | 03-02 예견2월인 경우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12.08.23 주의 (○○구 감사담당관) | 해당 없음 | |

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,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,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6. . .

작성자 : 추천부서 상훈담당 (직급) (성명) (서명인)
 확인자 : 추천부서장 (직급) (성명) (서명인)
 감사부서장 (직급) (성명) (서명인)
 인사부서장 (직급) (성명) (서명인)

〈작성시 참고사항〉

- ① 징계 :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, 징계종류 및 사면·말소 여부 표기
- ② 상훈 :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
- ③ 비위사실 :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·경고·주의 처분 표기
- ④ 기타 :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,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,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

※ SH공사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, SH공사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(※ 원본은 SH공사에서 자체보관)